

## 외국인유학생관리운영규정

제정 : 2018.03.01

개정 : 2018.09.13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3.10.16

개정 : 2024.03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)에서 수학중인 외국인 학생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“외국인유학생” 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본교에서 수학하는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을 말한다. <개정 2021.12.01.>
2. “유학생” 이라 함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학위과정에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. <개정 2021.12.01.>
3. “어학연수생” 이라 함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어교육과정에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4조(입학전형) ① 외국인 유학생은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의 외국인 특례 입학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선발한다.

② 입학허가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여 한국어능력을 포함한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.

제5조(지원자격) ① 외국인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외국인은 당해 모집학기의 요강에 기재된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지원자격 중 한국어능력의 입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4.03.01.>

1. TOPIK 3급 이상 자 : 성적표 제출 <개정 2021.12.01.>
  2. TOPIK 2급 이상 자 : 성적표 제출 <개정 2024.03.01.>
  3. TOPIK 성적 없는 자 : 원서접수 시 한국어능력 테스트 후 입학자격 결정 <개정 2021.12.01.>
    - 가. 정규대학 한국어 교육기관 3개 학기 이상 이수(수료)한 자 <신설 2024.03.01.>
    - 나. 정규대학 한국어 교육기관 국어 3급 과정 이수(수료)한 자 <신설 2024.03.01.>
- ② 제1항 2호내지 3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 후 1년 이내에 한국어 연수 300시간을

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함 <신설 2024.03.01.>

제6조(입학전형서류) 외국인 특례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외국인은 당해 모집학기의 요강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등록금 및 장학금) ① 외국인 유학생으로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 간의 협약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『장학금지급규정』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학사관리) ① 유학생의 학사업무는 해당 학과에서 「학칙」에 의하여 처리하고, 「학칙」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학적관리부서에서는 유학생에게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(휴학, 자퇴, 제적, 졸업)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, 외국인 관리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

1. 휴학 : 휴학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날
2. 자퇴 : 자퇴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날
3. 제적 : 학교 자체 학사관리 규정에 의해 제적 처리가 된 날
4. 졸업 : 졸업증명서(학위증)상 학위 수여일 <개정 2021.12.01.>

③ 어학연수생의 학사업무는 외국인 관리 주관부서(국제교육팀)에서 한다. <개정 2018.09.13., 2023.10.16.>

제9조(유학기간) ① 신입학에 의한 유학과정 기간은 소속학과에 따라 4학기, 6학기, 8학기로 한다.

제10조(신분) 외국인 유학생은 본 대학교 재학생과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며 본 대학 시설 및 복지혜택, 프로그램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11조(학점 취득 및 수수료) ① 외국인 유학생은 학년에 구애됨이 없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

② 외국인 유학생이 취득한 소정의 학점에 대하여 『학칙』에 따라 수수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전문학사학위의 취득) 유학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「학칙」에 따라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13조(숙소) 외국인 유학생은 본 대학교가 지정한 숙소에 거주할 수 있으며,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14조(징계등) 외국인유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 또는 조기 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

1. 국내법, 본 대학 학칙 및 제 규정 위반
2.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장기 결석시
3. 그 밖의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 <개정 2021.12.01.>

제15조(유학을 위한 체류자격) ① 외국인 유학생은 본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관련 법규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 상 체류자격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한다.

제16조(사증) ① 외국인 유학생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입학허가서 발급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 국내 입국을 지원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외국인 등록·체류기간의 연장, 체류자격의 변경, 재입국 허가,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 허가, 주소지 변경 등 비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17조(보험)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다음 각 호 중 1에 가입해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국민건강보험
2. 본 대학 지정 유학생보험
3. 국내 타 보험상품
4. 외국 타 보험 상품

제18조(기타)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출입국관리법」과 「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 시행 규정」 및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3-4-12 외국인유학생관리운영규정

---

부 칙  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 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 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